[붙임 2] 공단 가산점 및 우대사항 부여 기준

가산점 및 우대사항 부여기준

구 분		가산점	근 거
국가 유공자*	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	10%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1호
	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,전몰군경, 순직군경	10%	
	(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)의 배우자	5%	
	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	5%	
	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애국지사가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	10%	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2호
	애국지사의 가족, 애국지사가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	5%	
	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,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	10%	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, 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3호
	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	5%	
	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등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	10%	「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4조, 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4호
	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유족등,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(그를 지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)	5%	
	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	10%	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5호
	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,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	5%	
	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,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	10%	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7호
	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	5%	

구 분		가산점	근 거
장애인		10%	「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」 제2조, 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6호
의사상자	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, 의상자	5%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, 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8호
	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	3%	
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		5%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, 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9호
북한이탈주민		5%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, 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10호
다문화가족		5%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, 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11호
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을 갖춘 사람		1급 3%, 2급 2%, 3급 1%	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12호
자립준비청년 ※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른 청년 중「아동복지법」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연장된 자		5%	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14호
인공지능 활용능력시험(AICE) ※접수 마감일 기준 인공지능 활용능력시험(AICE) Associate 등급의 자격이 유효한 자		3%	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16호
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 국가유공자로서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.